

공 고 문

다음 장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.

1. 구 역 :

①진하해수욕장 수영경계선으로부터 내측 및 외측 30m 이내 해상

②진하해수욕장 해안선 바깥쪽 방향 150m이내 해상 구간→강양방파
제 우측끝단으로부터 팔각정까지 해안선 150m 이내 접근금지(별도도면참조)

※ 단, 금지구역내 레저사업장의 진·출입구역은 제외한다.

2. 기 간 : 해수욕장 개장기간

3. 대 상 : ①모든 수상레저기구

②동력 수상레저기구

4. 기타사항 : 주·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

5. 참고사항

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울산해양경찰서장

<금지구역 지정 도면>

